
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1-5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3월 6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행정처분대상 : (주)아톤텔레콤
2. 처 분 내 용 :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(역무의 제공 의무 등) 및 제32조(이용자 보호)에 따른 시정명령(이용재개 통보)을 이행하지 않음
4. 처 분 근 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(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)
5. 처 분 일 자 : 2011. 3. 7.